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2-73호

과태료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2년 10월 7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- 1. 공고사유 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- 2. 공고기간 : 2022. 10. 7. ~ 2022. 10. 21.(15일)
- 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(원)	체납자 주소
1	서연호	1981.05.20.	0178200274100004455	2,361,170	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
2	허선자	1951.03.03.	0178200274100004453	8,142,000	경남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
3	여설화	1989.09.10.	0178200274100004450	1,557,600	경남 진주시 진산로
4	안도영	1977.09.01.	0178200274100000374	2,592,000	경남 거제시 계룡로
5	윤송필	1974.09.16.	0178200274100000375	6,849,200	경남 거제시 거제중앙로
6	김종열	1961.09.06.	0178200274100004449	4,725,900	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상곡로
7	정항규	1958.11.22.	0178200274100004650	2,071,320	부산 서구 보동길
8	차상원	1974.11.24.	0178200274100007288	4,600,800	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(원)	체납자 주소
9	김동화	1969.06.03.	0178200274100004457	6,562,500	울산 남구 삼산로
10	한재준	1953.02.11.	0178200274100004640	6,292,500	울산 남구 삼산로
11	토가디앤씨(주)	110-86-1****	0178200274100004643	6,292,500	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
12	파티마의료소비 자생활협동조합	636-82-0****	0178200274100000351	6,337,500	부산 해운대구 중동1로
13	정성훈	1974.06.20.	0178210274100000715	1,274,200	울산 울주군 온산읍 명봉거남로
14	파티마의료소비 자생활협동조합	181151-0*****	0178200274100004264	18,330,000	부산 해운대구 중동1로
15	조종애	1959.06.21.	0178200274100003269	13,275,000	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
16	권정숙	1974.04.15.	0178200274100004651	10,800,000	경남 사천시 정동면 반릉1로

4. 문의처 : 방송통신사무소 부산관할팀

(부산시 동구 초량중로 29, 605호, ☎ 051-967-1204)

5. 공고내용 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
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
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
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
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